

#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3월 5일

대표발의자 박춘희의원

발의자 심현정, 김성기, 이은미, 이창열,  
김광성, 남진삼의원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 조문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신규 및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휴가(안 제16조)

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  
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 
정한다.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  
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  
용할 수 있다.

-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5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 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**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**”를 “**진단서**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의장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
2.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, 선거(투표, 개표)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
3. 그 밖에 의회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제4항(종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**10년**”을 “**5년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

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
제16조제4항(중전의 제8항)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10일”을 “1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 30년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9항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.

2.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병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</p> 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한 날(日)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</li> <li>2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</li> <li>3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(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(月)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</li> </ol>	<p>제15조(병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진단서-----</p> 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(月)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)

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<신 설>

⑥·⑦ (생략)

⑧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

<삭 제>

⑤ 의장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하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
2.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, 선거(투표, 개표)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
3. 그 밖에 의회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·③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

④ ---- 5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수 없으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- 2. 재직기간 20년 이상 : 20일

3. (생략)

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- 1. (생략)
- 2. 대규모 행사 개최 등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

3. (생략)

⑩ 의장은 의정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⑪·⑫ (생략)

-----  
-----.

- 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- 2. ----- 15일
- 3. ----- 이상 30년 미만 -----  
-----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⑧·⑨ (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)

[관계법령]

##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[시행 2023. 12. 11.] [대통령령 제33906호, 2023. 12. 5., 일부개정]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
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 
바에 따른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2